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주제

제4부: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전가격에 미치는 영향

2025년4월



소개 및 개요

- 2023년 11월 29일, 베트남 국회는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GloBE)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CIT)를 적용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107/2023/QH15호(이하 "결의안 107")를 발행하였다. 현재 세무총국은 결의안 107의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 최종 검토 중이다. The OECD guidelines and Resolution 107 include provisions on
- OECD 가이드라인과 결의안 107은 적격 국별보고서("적격 CbCR")를 기반으로 한 과도기적 국별보고서 세이프 하버("TCSH")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단순 준수 요건으로 간주되었던 CbCR이, 이제는 과도기 기간 동안 GloBE 준수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GloBE 계산이 적격 CbCR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과 선제적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본 뉴스는 다국적기업 그룹("MNE Group") —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베트남 MNE 그룹 및 베트남에 구성기업("CE")을 보유한 해외 MNE 그룹 — 이 결의안 107 및 향후 발행될 예정인 시행령 규정에 따라 Pillar Two의 이전가격("TP") 관련 주요 원칙을 전반적으로, 특히 과도기 기간 동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공하는 것이다.

Deloitte의 권장사항

Deloitte는 Pillar Two와 관련된 이전가격(TP)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 조치를 권장합니다.:



적격 CbCR 준비

- ✓ 그룹 국별보고서(CbCR)가 "적격 CbCR"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최종 모회사("UPE")가 적격 CbCR 작성 시 사용한 데이터 소스를 확인
- ✓ 과도기적 국별보고서 세이프 하버(TCSH) 요건 충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 포인트의 가용성과 신뢰성 평가



적격 CbCR 준비를 위한 권장 일정

- ✓ 최종 모회사(UPE)와 긴밀히 협조 및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CbCR이 가능한 한 조기에 준비될 수 있도록 조정 (이상적으로는 TCSH 제출 마감일 최소 3개월 전 확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과도기적 국별보고서 세이프 하버(TCSH) 요건에 대한 면밀한 평가 수행 가능하도록 준비



전문가 지원 활용

- ✓ 세무, 이전가격(TP) 및 Pillar Two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과도기적 국별보고서 세이프 하버(TCSH) 평가 및 적용 전 과정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협력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CbCR이 무엇인가요?

CbCR은 3단계 **TP 문서화** 중 하나로, 연결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MNE)이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2022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제132/2020/ND-CP호 시행령

이전 회계연도의 연결 매출액이 **EUR 750 million**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 통화 기준) 이상인 경우

베트남에 소재한 최종 모회사(UPE)인 납세자는 최소 **VND 18 thousand billion** 이상의 매출인 경우



CbCR의 역할

GMT 규정 도입 이전

CbCR은 TP 문서화 패키지 중 하나이다

규정 도입 이전에는, CbCR은 주로 준수(compliance) 목적을 위해 작성되는 TP 문서화 패키지 중 하나였다.

CbCR은 현지 납세자의 이전가격 리스크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CbCR에 포함된 구성기업(Constituent Entities)의 총매출, 이익률, 세율, 종업원 수 등의 정보는 현지 납세자의 잠재적인 이전가격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GMT 규정 발행 이후

적격 CbCR은 TCSH 테스트에 활용된다.

TCSH

과도기 기간 중 다국적기업(MNE)의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



다국적기업(MNE)의
관할권별 매출 및
소득 계산 시 적격
CbCR 데이터를
기준으로 활용

CbCR의 역할

표 1: 세무 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현황

과세 관할지역	매출			법인세 차감 전 손익	납부한 소득세 (현금주의 기준)	현재 회계연도 발생 소득세	명시 자본금	이익잉여금	종업원 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
	비특수 관계자	특수 관계자	총							

표 2: 과세 관할지역별 집계에 포함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전체 구성기업 목록

과세 관할지역	과세 관할지역에 소재한 구성기업(CE)	거주지 과세 관할지역과 다른 경우 해당 조직 또는 법인의 설립지 과세 관할지역	주요 사업 활동									
			연구 및 개발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관리	구매 또는 조달	제조 또는 생산	판매, 마케팅 또는 유통	행위	신 제품 개발	서비스 제공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서비스	그 외

- ✓ GloBE 규정과 국별보고서(CbCR) 규정은 유사한 적용 범위(EUR 750 million)를 가지고 있다.
- ✓ CbCR 제출 요건은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평가되며, GloBE 규정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 ✓ CbCR에서 구성기업(CE)을 식별하고 관할권별로 소득을 배분하는 방식은 GloBE 규정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GMT 도입을 감안할 때, 과도기 기간 동안 CbCR이 GMT 목적을 위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kr/tax)

Deloitte's Tax & Legal Alert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적격 국별보고서 (Qualified Country-by-Country Report)



적격 국별보고서가 무엇인가요?

적격 CbCR

- **적격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하고 제출한 보고서



적격 국별보고서

- 1) 최종 모회사(UPE)의 연결 재무제표(Consolidated FS)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정**
-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구성기업(CE)의 개별 재무제표("FS"):
 - 허용 가능한 회계기준(Acceptabl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에 따라 작성된 경우, 또는
 - 허가된 회계기준(Authorised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해당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경우
- 3) 규모 또는 중요성(materiality) 요건으로 인해 다국적기업 그룹(MNE Group)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구성기업(CE)에 대해, MNE 그룹의 국별보고서(CbCR) 작성을 위해 사용된 **재무제정**



TP 목적의 CbCR 보고 대상 구성기업과 TCSH 적용 대상 구성기업 간의 차이

국별보고서(CbCR)에 보고된 구성기업과 TCSH 적용 대상이 되는 구성기업 간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이 특정 조건이나 별도의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 기인한다:

	2022년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따라 TP 목적상 CbCR에 보고된 구성기업	TCSH 적용 기업
(a) 최종 모회사(UPE)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구성기업, 및		
(b) 규모 또는 중요성(materiality) 기준에 따라 제외된 구성기업	✓	✓
고정사업장 ("PE") (*)	✓	✓
합작투자기업 및 그 자회사(**)		✓
매각 예정 (Held – for – sale) (최종 모회사(UPE)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제외된 기업으로, 매각 예정이며 핵심 사업 운영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 OECD BEPS 액션 13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그룹(MNE Group)은 재무보고, 규제요건, 세무보고 또는 내부 관리 목적을 위해 본사가 작성한 고정사업장(PE) 별 개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본사의 총매출 및 세전이익(Profit Before Tax) 중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금액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 이 구성기업은 GloBE 규정상 특별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kr/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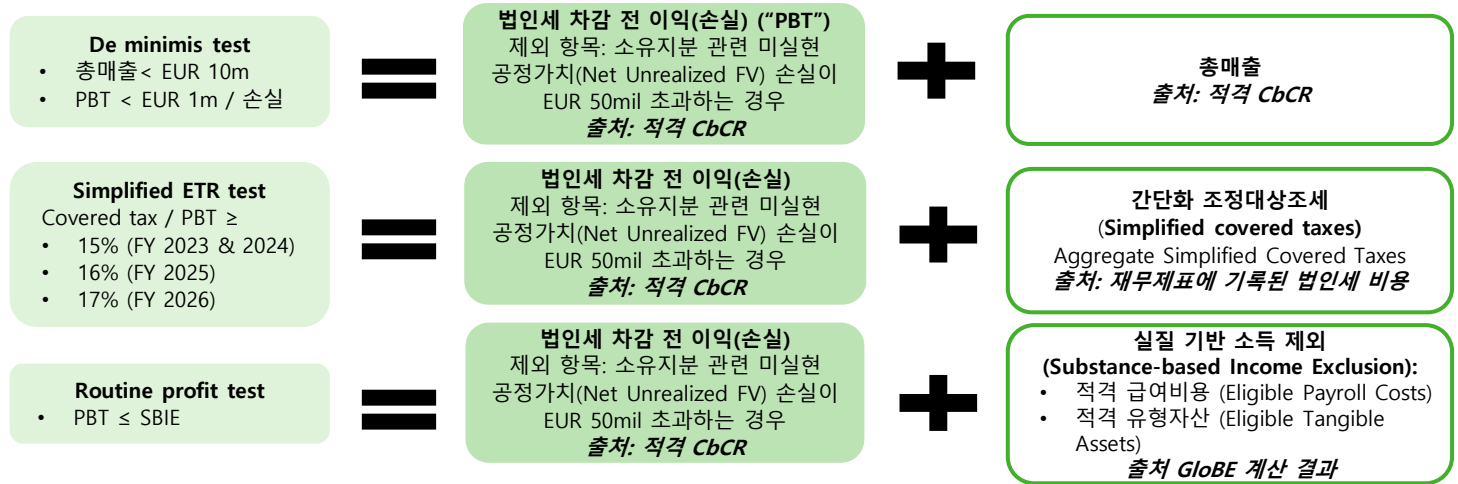
Deloitte's Tax & Legal Alert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적격 국별보고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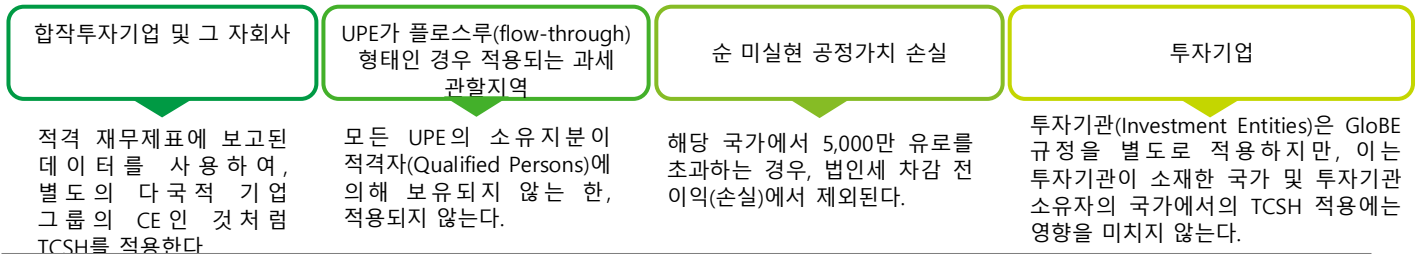


과도기적 국별보고서 세이프 하버(TCSH) 테스트

과도기 기간 중, 관할지역의 TCSH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세 가지 CbCR 기반 테스트가 활용된다.



(*) TCSH 적용 기간 중 GloBE 규정상 특별 적용



(*) TCSH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무국적 CE (Stateless CEs)
2. 하나의 적격 CbCR이 결함된 그룹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다수 모회사를 가진 다국적기업(Multi-parented MNE)
3. 적격 배당과세제도(Eligible Distribution Tax System) 적용을 선택한 CE가 있는 국가
4. 이전 연도에 TCSH를 적용하지 않은 국가("한 번 제외되면, 항상 제외" 원칙 - "Once out, always out")

세 가지 CbCR 기반 테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해당 국가에 대한 Pillar Two 추가 세금은 0이 된다

주요 시사점



신고 일정 관련 우려사항

- 베트남에서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QDMTT") 신고 기한은 UPE의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이다. 이는 CbCR 준비가 지연될 경우 QDMTT 신고 및 TCSH 판정과 관련하여 GMT 평가의 적시성과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납세자에게 도전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따라서 납세자는 내부 보고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고, CbCR 데이터가 가능한 한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권장: QDMTT 신고 기한 최소 3개월 전) UPE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

Deloitte's Tax & Legal Alert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SG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



Contact us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Pham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